

라.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조정(제23조제3항 신설, 제23조제4항)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9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23호의2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85조제1항제20호의5”를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5”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저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 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 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 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	-----------------	-----------------	-----------------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에 허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히.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10일)	사업일부정지(15일)
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서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별표 5 제1호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0호	360	360	180	180	360	180	180	
---	-----------------	-----	-----	-----	-----	-----	-----	-----	--

별표 5 제1호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0호의5					180			
---	-------------------	--	--	--	--	-----	--	--	--

별표 5 제1호의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21조제9항”을 “법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 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180		180			
---	--	-----	--	-----	--	--	--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에 터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180	180	180		180	180	
피.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60	60	60		60	60	
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80	180			1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고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허목부터 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의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 등 안전에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운수종사자 고용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신설)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방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갈음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허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터목 신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갈음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에 대한 과징금 금액 인상(별표 5 제1호의 제12호)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현행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1), 2), 3), 4) 및 5) 외의 부분 중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노선버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4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행기록증 2부를 발부하여야”를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행기록증 1부를”을 “운행기록증을”로, “부착하고, 나머지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를 “부착(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연합회”를 “교통안전공단, 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 중 “별표 2의 비고”를 “별표 2 제2호”로,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를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이하 “천연가스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송 부대시설

-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가목1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0) 및 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 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 20)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 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가)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 나) 운수종사자가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4 제2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1호라목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별표 4의3 제1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1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 점수가”를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별표 4의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줄을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별표 5 제2호가목4) 처분기준란 중 “5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목 7)부터 10)까지를 각각 8)부터 11)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6호	
가) 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 50일
다) 중상자 6명 이상		자격정지 40일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3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항·제7항·제8항 및 제10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가목15) 및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운행기록증 발부 현황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부하는 운행기록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운수종사자 교육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에 관하여는 별표 4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운행정보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	--	------	----

신청인	상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신고내용	운행목적 : [] 통근 [] 통학 [] 관광 기타()	자동차 등록번호
	운행경로	운행일시
	운전자명(버스운전자격증번호)	기타 필요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수리	→	발부
신청인		처리기관 (운수사업조합)		처리기관 (운수사업조합)		처리기관 (운수사업조합)		처리기관 (운수사업조합)

210mm×297mm[일반용지 54g/㎡]

[별지 제23호의3서식]

운행기록증

① 회사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운전자 성명 (버스운전자격증번호)			
④ 자동차등록번호			
⑤ 운행목적	☐ 통근 ☐ 통학 ☐ 관광 ☐ 기타()		
⑥ 운행경로			
⑦ 운행일시	. . 부터 . . 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발부합니다. 년 월 일 사·도○○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직인			

210mm×150mm[백상지(80g/㎡)]

◇개정이유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안전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교통사고로 일정한 수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등의 안전 관련 안내 방송 의무 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하도록 함.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의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신설(안 별표 4 제1호가목20) 신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다.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4 제1호라목 신설)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함.

라.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안 별표 4의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마.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5 제2호가목4), 안 별표 5 제2호가목7) 신설)

전세버스의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을 한 경우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상향하고,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자 2명 이상을 발생시킨 경우에 자격정지 6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40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